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636호
2. 발 의 자 : 이종배 의원
3. 발의일자 : 2024년 3월 31일
4.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II. 주문

- 2024년 12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임에도,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전교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감싸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에 교육감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개탄하며 불법적인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촉구함.

III. 제안이유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24년 1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발표하였음.

-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과거 전교조가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대해 2020년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그럼에도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전교조의 불법 행위를 감싸는 태도를 보이며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를 회피하고 있음.
- 이에 교육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불법적인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필요함.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헌법」, 「지방공무원법」
2. 이송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결의안은 2025년 3월 31일 이종배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636호로 발의되어 2025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결의안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2024년 12월 10일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이 헌법과 법률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를 엄중하게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결의안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결의안을 비롯한 지방의회의 의견표명은 지방의원의 의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에¹⁾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지는 행위입니다.²⁾
- 물론 지방의회의 결의안은 관계기관 사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지만, 지방의원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식적으로 표현한 의사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가 아닌 사회 현안이나 정책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다룰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2025), 139p ‘결의안 채택 등 의견 표명의 효과’

- 이에 동 결의안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행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을 두고 전교조가 성명을 발표한 것이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임을 밝히고, 교육감에게 해당 성명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직원을 징계하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 특히 동 결의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과거 전교조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공적 가치 보호에 결의안의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결의안은 제안 이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

-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³⁾은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기본원칙⁴⁾입니다.
- 이는 교육 대상자인 학생들에게 특정이념이나 정당에 치우친 교육을 방지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학교가 특정 이념을 주입되는 장소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⁵⁾입니다.
- 이에 따라 교원 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각종

3) 「대한민국헌법」제31조 ①~③ (생략)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⑥(생략)

4)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5) 「교육기본법」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에서 명시⁶⁾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대법원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⁷⁾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라고 판시⁸⁾한 바 있습니다.

- 그러면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배경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일반시민보다 엄격해야 하나 개별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법적 판단의 영역이라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동 결의안이 서울시교육감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에 참여한 서울지역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촉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

6)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④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운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8)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2012상,912]

9)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조¹⁰⁾에 따라 교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받았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이처럼 교원에 대한 임명권(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은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할 것이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에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판시¹¹⁾하고 있습니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결의안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표명은 ‘권고’ 수준이어야 하고, 결의안이 접수기관의 고유권한 행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표명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¹²⁾

○ 따라서 동 결의안은 서울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한편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극적으로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의견표명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부 차원의 조치 요청이 전혀 없고, 향후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후속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¹³⁾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교육부 차원의 조치가 있거나 수사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0)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9조의2제8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

2. 삭제 <1999. 9. 30.>

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1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12)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2025), 139p ‘결의안 채택 등 의견 표명의 효과’

13) 교육전문위원실-948(행정관리담당관-4469) 서울시교육청 의원발의 결의안 의견서

에서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통보될 경우, 후속 처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이진석(2180-8266)
----------	----------------	-------	----------------